

# 제4편 일반행정

## 제1장 조직 및 인사

### 1. 직제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현도학원 정관 제7장 제2절 및 가톨릭꽃동네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 학칙 제12장에 의하여 본 대학교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7.1. 자구수정)(2021.6.22. 개정)

제2조(적용 범위) 본 대학교의 직제는 법령, 학교법인 꽃동네 현도학원 정관(이하 “정관” 이라 한다) 또는 기타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사무분장)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교직원) 본 대학교에 다음 각호의 교원과 직원을 둔다.

1. 교원은 직급을 구분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두되 필요에 따라 명예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석좌교수, 겸임교수 및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2012.7.1. 자구수정)
2. 직원은 직종을 구분하여 일반직과 기능직을 두고 그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교원의 직무) 교원은 학문을 연구하고 학생을 교수·지도하며, 조교는 전임교원의 학사와 행정에 관한 업무를 돕는다.

제6조(직원의 직무) 직원은 분장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정원) 교원과 직원의 정원은 따로 정한다.

#### 제2장 총장

제8조(총장) 총장은 가톨릭꽃동네대학교의 대표자로서 교학 및 행정 전반을 관리하며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2021.6.22. 개정)

제9조(비서실) ① 비서실은 총장에 관한 비서업무를 관장한다.

- ② <삭제> (2004.3.2.)

#### 제3장 보직 및 임기

제10조(보직 및 임기) ① 대학원장 및 각 처장 보직은 교수 또는 부교수인 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보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021.2.4. 수정)

- ② 제1항 이외의 보직은 총장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008.3.1. 자구수정)

③ 부속기관, 부설 교육기관, 부설연구기관, 기타 기관의 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023.2.7. 개정)

- ④ 행정부서에 부처장, 차장 및 과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및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008.3.1. 수정) (2019.2.8. 개정) (2023.2.7. 개정)

⑤ 행정부서의 부처장, 차장 및 과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2023.2.7. 개정)

## 제4장 행정조직

제11조(대학본부) ① 총장이 통할하는 대학본부에 기획관리처, 교목처, 교무입학처, 학생지원처를 둔다. (2008.3.1. 수정) (2016.4.25. 명칭변경) (2019.2.8. 직제개편)

② 전항의 행정부서에는 처장을 두며, 부서에 따라 부처장 또는 차장을 둘 수 있다. (2023.2.7. 개정)

제12조(기획관리처) ① 기획관리처는 학교의 장단기 발전을 위한 기획업무, 예산편성, 섭외홍보 및 교내감사, 학교의 일반행정과 재무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019.2.8. 직제개편)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처에 기획과, 예산과, 섭외홍보과, 총무과, 재무과, 전산과를 둔다. (2019.2.8. 직제개편)

제13조(교목처) ① 교목처는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가톨릭 이념과 꽃동네 정신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사목활동을 주관하며 영성·인성교육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016.4.25. 수정)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목처에 교목팀과 부속기관으로 글로컬봉사센터를 둔다. (2016.4.25. 신설) (2020.2.6. 개정) (2023.2.7. 개정)

제14조(교무입학처) ① 교무입학처는 대학의 교무행정 및 입학업무, 연구업무 등 종합 행정 서비스 제공 업무를 관장한다. (2011.7.1. 자구수정) (2019.2.8. 직제개편)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무입학처에 교무과, 학적과, 입학관리과를 둔다. (2011.7.1. 삭제) (2016.2.3. 자구수정) (2019.2.8. 직제개편)

제15조 <삭제> (2011.7.1. 삭제)

② (2011.7.1. 삭제)

제16조 <삭제> (2019.2.8. 직제개편)

제17조(학생지원처) ① 학생지원처는 대학의 학생지도 전반, 교수학습지원, 학생생활상담, 취·창업지원, 장애학생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2019.2.8. 직제개편)(2021.2.4. 직제개편)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지원처에 학생과와 부속기관으로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생생활상담센터, 취·창업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2019.2.8. 직제개편)(2020.4.21. 개정)(2022.4.22. 개정)(2022.12.6. 개정)

## 제5장 학부(과), 대학원 (2011.7.1. 자구수정)

제18조(교양학부 및 학부(과), 대학원) ① 교양학부 및 학부(과)에 교양학부장 및 학부(과)장,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2011.7.1. 자구수정) (2020.4.21. 개정) (2023.2.7. 개정)

② 교양학부장 및 학부(과)장은 교양학부 및 학부(과)의, 대학원장은 대학원의 교학 및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2011.7.1. 자구수정) (2020.4.21. 개정) (2023.2.7. 개정)

③ 대학원에는 교학부를 둔다.

## 제6장 부속기관

제19조(부속기관) 다음 기관에 기관장을 둔다.

도서관, 출판부, 가톨릭국제교육원, 아미쿠스(가상) 복지관, 생활관, 보건실, 인권센터, 심리상담센터 (2008.3.1. 추가삽입) (2011.12.28. 추가삽입) (2017.11.1. 추가삽입) (2019.2.8. 직제개편) (2019.4.24 개정) (2020.2.6. 개정) (2022.2.8. 개정) (2022.4.22 개정)(2022.12.9. 개정) (2023.2.7. 개정) (2024.2.16. 개정)

① 도서관

1. 도서관은 도서 및 연구자료를 수집·관리·열람케 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2. 전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사서과와 열람과를 둔다.

② 출판부

출판부에는 학술연구서와 기타 학교가 필요한 도서간행 업무를 관장한다.

③ <삭제. 2020.2.6.>

④ <삭제. 2023.2.7.>

⑤ <삭제. 2023.2.7.>

⑥ 가톨릭국제교육원 (2008.3.1. 신설)

가톨릭 이념과 꽃동네 정신에 입각한 국제 교육프로그램 개발, 수행, 연구 업무를 관장한다. (2019.4.24. 자구수정)

⑦ 아미쿠스(가상) 복지관 (2008.3.1. 신설) (2019.2.8. 직제개편)

사회복지현장과 같은 시스템을 통한 실무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인력의 양성업무를 관장한다.

⑧ 생활관 (2011.12.28. 신설)

생활관은 생활관생 관련 업무 및 생활관 시설물 유지 관리를 관장한다.

⑨ <삭제. 2019.4.24.>

⑩ <삭제. 2023.2.7.>

⑪ <삭제. 2023.2.7.>

⑫ 보건실 (2022.2.8. 신설)

보건실은 교내 보건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⑬ 인권센터 (2022.4.22. 신설)

인권센터는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업무를 관장하며 인권센터에는 인권상담실과 양성평등성상담실을 둔다.

⑭ 심리상담센터 (2024.2.16. 신설)

심리상담센터는 심리상담 서비스 및 정신건강 교육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 제7장 부설 교육기관(2023.12.19. 개정)

제20조(부설 교육기관) 학교에 부설 교육기관을 두고 각 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총장이 임명한다. (2023.2.7. 개정)

① <삭제. 2023.2.7.>

② 카리타스평생교육원 (2023.2.7. 신설)

③ BLS센터 (2023.2.7. 신설)

④ 생명문화센터 (2023.12.19. 신설)

## 제8장 부설 연구기관

제21조(부설연구기관) ① 대학교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소장을 둔다.

## 제8장 2 수탁운영기관

- 제21-2조(수탁 운영기관)① 대학교에 교육·연구·실습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사회복지시설 등을 수탁 운영기관으로 둔다.
- ② 수탁 운영기관의 기관의 장은 외부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
- ③ 수탁 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제9장 위원회

제22조(위원회) 학사행정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 자문기관으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0장 보 칙

제22조 (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기구표)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8조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기구 표

